

#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사항의 반영과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
나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4조의3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” 로 한다.  
제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중 “아니된다” 를 각각 “아니 된다” 로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같은 조 제7호 중 “공직자윤리법” 을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 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34조의 3</u> 규정에 의한 사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(이하"의원"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38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3조(윤리실천규범)</b>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<u>아니된다</u>.</li> <li>2.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,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<u>아니된다</u>.</li> <li>3.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<u>아니된다</u>.</li> <li>4.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<u>아니된다</u>.</li> <li>5. 강연, 출판물에 대한 기고, <u>기타</u>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<u>아니된다</u>.</li> <li>6.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<u>아니된다</u>.</li> </ol>	<p><b>제3조(윤리실천규범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<u>아니 된다</u>.</li> <li>2. ----- -----<u>아니 된다</u>.</li> <li>3. ----- -----<u>아니 된다</u>.</li> <li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 된다</u>.</li> <li>5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 된다</u>.</li> <li>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 된다</u>.</li> </ol>

<p>7. <u>공직자윤리법</u>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8.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<u>아니된다</u>.</p>	<p>7. 「<u>공직자윤리법</u>」----- -----</p> <p>8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 된다</u>.</p>
--	--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<지방자치법>

제38조 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